



제1642호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 0 6 7 호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총 무 과 2
- 규 칙 제 1 0 6 8 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노 인 장 애 인 과 4
- 규 칙 제 1 0 6 9 호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 성 가 족 과 6
- 규 칙 제 1 0 7 0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 소 행 정 과 9

공 고

- 공 고 제 2 0 5 0 호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 지 정 보 과 11
- 공 고 제 2 0 5 1 호 소래포구전통어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생 활 경 제 과 14
- 공 고 제 2 0 6 2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 자동차 관리 과 17
시송달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19
예정 공고

고 시

- 고 시 제 1 7 5 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46호선), 공원(석촌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 시 재 생 과 20
- 고 시 제 1 7 6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 시장: 구월농산물시 장 이전사업)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 도 시 재 생 과 22
경) 고시

회 람								
----------------	--	--	--	--	--	--	--	--

규 칙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0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1067호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을 “정상근무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일직근무 형태에 대한 설명을 현 상황과 맞게 문구 수정
-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장을 통하여 대체휴무 사용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

□ 주요내용

- 일직 근무시간 설명 현행화(안 제4조제2항)
-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장(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 10일)
(안 제5조제1항)

규 칙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0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1068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규칙은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해당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제정 2003.7.18. 규칙 제 591호)

규 칙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0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1069호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중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을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를 “청소년복지심의위
원회” 로 한다.

제2조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실행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행위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 실행위원을 실무위원으로 변경(안 제10조)
-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0조)

규 칙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0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1070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1인에” 를 “1명에게” 로, “월” 을 “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를 “부과일부터 납부
기한 종료일 이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1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한도를 변경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맹목적인 신고를 제한하고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포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연 1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신고의 제한을 도모함(안 제9조)
- 종전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050호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21.7.1.기준
- 대 상 : 286필지
- 결정·공시일 : 2021. 10. 29.
-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1. 10. 29. ~ 11. 29.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방 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2~6153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KRW/ m ²			KRW/ m ²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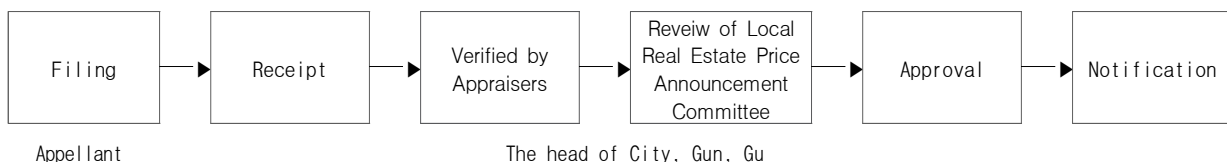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051호

소래포구전통어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 관내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청 생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7일

남 동 구 청 장**1. 설치목적**

○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대상)

3. 사 업 명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CCTV 설치**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6. (21일간)

6. 설치장소

연번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7 (논현동)	3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생활경제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소래포구어시장팀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1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7 (논현동)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소래포구어시장팀

○ 팩스 : 032) 453 - 266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소래포구어시장팀 ☎ 032) 453-5932

8.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소래포구전통어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소래포구전통어시장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소래포구전통어시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06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8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1. 10. 28. ~ 2021. 11. 12.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경과 후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로 진행됩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시정조치(개선명령) 통지서 10월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무1240	주식회사 **산업개발	2021.09.23	수취인불명	번호판 가림(스티커 부착)	216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번길 *, *층(고잔동)
2	인천부평*2245	정*만	2021.10.13	폐문부재	번호판 불법가이드	215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간석동, ****맨션)
3	**조8359	김*호	2021.10.13	폐문부재	조명 엠블럼 부착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구월동, 코** **드림)
4	**무8980	조*석	2021.10.13	폐문부재	후부반사판(리플렉터) LED 임의개조	216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논현동)
5	**소1776	손*기	2021.10.22	폐문부재	미인증 LED 제동등	216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아파트)
6	**노2781	LYAN ***TOR	2021.10.22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스티커 부착)	216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번길 *_*, ***호(논현동)
7	경기안성*5900	신*원	2021.10.22	폐문부재	번호판 불법가이드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동 ***호(만수동, **빌라)
8	**버8001	박*일	2021.10.25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 (자전거캐리어)	216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마을*****아파트)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10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 11. 1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 10. 28. ~ 2021. 11. 11.(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6 -0199729	정선장	이윤희	소래역로 12, 지하1층 B01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 5. 1.	2021. 11. 12.
일반음식점	2018 -0203749	정선장라이브	이윤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지하1층 B02(일부), B03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 4. 30.	2021. 11. 1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 11. 11.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10월 2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75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46호선), 공원(석촌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중로3-46호선), 공원(석촌근린공원)]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를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35-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6	12	국지 도로	580	간석동 735-1	간석동 780	일반 도로	건설부 고시 제1981-363호 (1981.09.25.)	
변경	중로	3	46	8~15	국지 도로	580	간석동 735-1	간석동 780	일반 도로		

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46호	중로 3-46호	○ 면적 증가 - 당초: B=12m, L=580m A=5,818.0㎡ - 변경: B=8~15m, L=580m A=5,867.0㎡ [A= 5,818.0㎡ → 5,867.0㎡ / 증] 49㎡]	○ 부분집행 구간 실효 및 교통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3)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석촌 공원	근린 공원	남동구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53,410	52,944	'66.8.31. (고시 제2701호)	감466㎡

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석촌공원	○ 면적 변경(감466㎡) : 53,410㎡ → 52,944㎡	○ 중로3-46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시장(구월농산물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시장(구월농산물시장)]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종합건설본부(건축1팀 ☎032-440-5261),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5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경관녹지	남동구 남촌동 652-1번지 일원	26,675	증)0.8	26,675.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11호 (2016. 5. 30.)	시장 과 중 복 결 정
변경	-	녹지	경관녹지	남동구 도림동 726번지 일원	17,566	증)8.6	17,574.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6호 (2015. 6. 1.)	-
변경	-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남동구 남촌동 652번지 일원	169,853	증)172.9	170,025.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6호 (2015. 6. 1.)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26,675㎡ → 26,675.8㎡(증 0.8㎡)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17,566㎡ → 17,574.6㎡(증 8.6㎡)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	시장	○ 면적 변경 - 면적 : 169,853㎡ → 170,025.9㎡(증 172.9㎡)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하여 선형 및 면적 변경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나.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칭: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A=169,853\text{m}^2$
- 변경: $A=170,025.9\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16.08.22. ~ 2022.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편입토지 조서(변경)

일련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합 계				170,025.9	170,025.9	-	
1	남촌동	652	대	137,959.6	137,959.6	인천광역시	
2	남촌동	652-1	공	4,151.3	4,151.3	인천광역시	
3	남촌동	652-2	도	1,713.6	1,713.6	인천광역시	
4	남촌동	652-3	공	3,240.8	3,240.8	인천광역시	
5	남촌동	652-4	도	1,720.0	1,720.0	인천광역시	
6	남촌동	652-5	공	2,764.3	2,764.3	인천광역시	
7	남촌동	652-6	공	13,822.4	13,822.4	인천광역시	
8	남촌동	652-7	도	322.4	322.4	인천광역시	
9	남촌동	652-8	대	208.0	208.0	인천광역시	
10	남촌동	652-9	공	957.9	957.9	인천광역시	
11	도림동	726-1	대	127.4	127.4	인천광역시	
12	도림동	726-2	공	1,412.0	1,412.0	인천광역시	
13	도림동	726-3	도	660.4	660.4	인천광역시	
14	도림동	727	대	638.7	638.7	인천광역시	
15	도림동	727-1	공	169.2	169.2	인천광역시	
16	도림동	727-2	공	157.9	157.9	인천광역시	